



HERI High-potential Enterprises Research Institute REPORT

2015년 9월 21일(Vol. 01)

자료문의 |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

주소 | 0417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3층(도화동, 도원빌딩)

Tel | 02-3275-3125 Fax | 02-3275-3131

집필자 | 김재현 연구위원

HERI Report는 국내외 중견기업관련 경제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국가 경제정책을 지원하고, 미래발전을 위해 중견기업에게 실천중심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해외사례를 통해 본 국내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

김재현 연구위원

현행 공공조달 시장의 주요 정책은 대부분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와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판로규제는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조달시장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 등을 야기한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국내 제도는 시혜적이며 중소기업 보호위주 정책의 특성을 나타낸다. 미국은 특정 금액구간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에게 판로를 지원하고 있고, 일본은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에게 공공시장에서 특혜를 부여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지원은 간접지원만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외 제도는 단순한 중소기업 보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과도한 보호를 지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국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도 중소기업 대상 계약의 금액구간 지정,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한 예외 인정 등 현행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방식의 제도를 지양하고 중소기업 육성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내 공공조달 주요 정책은 중소기업 판로 직접 지원정책으로 구성

- ▶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과 하위 시행령 및 운영세칙에서 규정
- ▶ 2014년 현재 국내 공공조달 금액의 약 70%가 중소기업에 의해 납품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중소기업자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우수제품 제도 등 대부분 지원정책이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이하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는 특정 품목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자만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

- ▶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07년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 도입
- ▶ 현행 중기간경쟁제품은 207개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조달계약 체결
- ▶ 중기간경쟁제품 포함 품목 중 공사용 자재의 경우 분리발주를 통해 중소기업자 생산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지정

국내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는 직접적인 품목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경쟁력 약화, 공공조달 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 유발 가능

- ▶ 중소기업 공공판로지원은 공공조달시장 확대 및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함에 따라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
- ▶ 그러나 직접적인 품목규제는 해당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저해하여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가능
- ▶ 또한 조달의 특성에 관계없이 특정 시장에 중소기업 진입만을 허용함으로써, 높은 안전기준 또는 품질기준이 요구되는 제품의 공공조달물품의 품질 저하 우려

선진국 해외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 사례를 통한 국내제도 시사점 도출

- ▶ 선진국 해외 지원 방식에 비해 국내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지원 방식은 직접적, 시혜적으로, 이는 중소기업 보호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산업경쟁력 및 중소기업 자생력 약화 우려
- ▶ 따라서 선진국 해외 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국내제도의 차이점을 고찰하여 국내제도 개선 방향 도출 필요

가. 미국 제도

(1) 미국의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미국 공공조달 지원제도의 주 대상은 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기업으로 구성

- ▶ 미국은 범정부차원에서 소기업과 여성중소기업, 약자중소기업, 낙후지역중소기업 등 사회 경제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
- ▶ 미국은 소기업과 약자기업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설정. 소기업 구매목표 비율은 23%로 국내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 50%의 절반수준임

표 11 범정부 차원 미국 소기업 및 약자기업 구매목표

구 분	목표비율(%)
소기업(SBs)	23
여성소기업(WOBs)	5
약자소기업(SDBs)	5
낙후지역(HUBzone) 소기업	3
상이제대군인 소유 소기업(Service Disabled Veteran Owned SBs)	3

출처: "Small Business Act",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 미국 소기업 규모기준은 종업원 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 20인 미만은 영세기업, 20~99인은 소기업, 100~499인은 중기업으로 분류. 이 중 구매목표 비율은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함¹⁾

미국은 Set-Asides 제도를 통해 특정 금액구간 조달 계약건에 대해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 ▶ Set-Asides 제도는 미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서 규정한 금액 3,000 달러 이상 150,000 달러 미만 계약은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참가기회를 부여하는 제도²⁾
- ▶ 계약담당관은 소기업 대상 할당의 적정 여부를 판단. 이 때 3,000 달러 이상 조달 계약에 대해 ① 최소 둘 이상의 적격성 있는 소기업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② 적정 시장가격에 낙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가능한 경우 소기업 할당을 허용

1) 미국의 소기업 할당에 대한 기업규모 정의를 국내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New Jersey State 홈페이지(<http://www.nj.gov/njbusiness/contracting/sbsa/>)를 통해 해당 용어가 소기업(제조업 기준 100인 미만, 국내 소기업과 기준 일치)에 한정되는 용어임을 알 수 있음.

2)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bpart 19.5

미국 Set-Asides 제도는 소기업 할당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허용

- ▶ 소기업에 대한 할당은 구매대상 전체 할당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기업에게 계약의 일부만을 할당하고 비중소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부분할당제도(Partial Set-Asides)를 시행 중(단, 시설공사는 제외)

미 연방조달규정 부분할당제도(Partial Set-Asides) 적용 조건

- 전체할당이 적절하지 않을 때(연구 시설의 복잡한 장비 필요 시 전체를 소기업에 발주하는 것은 어려우나 결과보고서 작성은 소기업에 할당 가능)
- 조달 요구물이 2개 이상의 경제적인 생산량이나 합리적인 수량(lots)으로 분리 가능할 때
- 1개 이상 소기업 사업영역이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소기업 할당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능력과 생산설비 보유가 가능하다고 예상될 때
- 해당 조달이 단순조달절차에 해당되지 않을 때

* 단, 오직 2개의 기업(1개 대기업 및 1개 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계약부서 장의 승인 없이 부분할당 불가

국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특정 품목을 지정하여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에게 직접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의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 지원은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품목이 아닌 특정 금액구간 계약 건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미국 제도는 소기업 지원 대상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특성에 따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 ▶ Set-Asides에 의한 낙찰 이전에 계약담당관이 정당한 시장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판단되면, 소기업에 대한 할당을 철회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운영 방안을 제시

(2) 시사점

미국의 Set-Asides 제도와 국내 제도 차이점

- ▶ 중기경쟁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 Set-Asides는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 ▶ 국내제도는 품목을 직접적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실시하지만, 미국은 품목이 아닌 특정 금액구간 계약 건에 대한 지원을 실시. 단, Set-Asides 제도 내에서 품목할당(Class Set-Asides)을 허용하나, 미래 구매 소요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 ▶ 국내제도는 유찰사유가 아닐 경우 사실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Partial Set-Asides 및 계약특성에 따른 예외를 폭넓게 인정. 따라서 미국 제도는 소기업 지원 대상 계약이라 하더라도 소기업 이상 기업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임

나. 일본 제도

(1) 일본의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일본은 「관공수적격조합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 실시

- ▶ 관공수적격조합제도는 정부가 인정한 중소기업 적격조합과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 ▶ 적격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조합에 대한 제한적 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참가자격심사 시 종합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등의 혜택 부여
- ▶ 관공수적격조합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별로 수주하기 어려운 발주건에 대한 공동 수주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제고시킴

관공수적격조합제도는 직접지원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 지정에 따른 판로규제 성격 배제

- ▶ 일본에서는 구매기관들의 관공수적격조합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활용이 미흡한 편으로, 책임소재 불분명, 구매기관 발주 요건에 적합한 조합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됨³⁾

* 1999년 적격조합의 수주비율은 관공수 전체의 0.73%에 불과. 중기간경쟁제품제도는 2014년 전체 중앙조달 대비 비중이 약 57%

- ▶ 관공수적격조합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수요기관에 선택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나 실질적으로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제도가 아니며, 공공조달 계약 시 적격조합과의 계약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특정 계약에 대한 직접규제의 성격을 배제한 제도임

(2) 시사점

일본의 관공수적격조합제도와 국내 제도 차이점

- ▶ 일본의 관공수적격조합제도는 적격조합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특혜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로 풀이됨
- ▶ 그러나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와 같이 특정 품목 또는 계약을 명시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않고, 비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허용

3) 중소기업특별위원회·산업연구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개선방안”, 2001

다. 유럽 제도

(1) EU의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 현황

EU는 정부조달시장 진입에 중소기업에만 직접적 혜택을 주는 제도를 원칙적으로 배제

- ▶ EU는 경쟁법, Treaty 등에 의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에만 한정하여 직접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EU는 회원국들에게 공공조달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지 않음

- ▶ EU의 공공조달 지원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공공분야 조달절차에 관한 지침」으로, 해당 지침에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EU 공공조달정책은 중소기업 보다는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을 중점 지원

- ▶ EU는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사회책임공공조달(Social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SRPP) 가이드라인”을 발표
- ▶ 사회적 약자 기업과 고용 증대, 근로법 준수,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들에 낙찰과정에서 가점 부여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돕기 위한 정보공개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실시

- ▶ EU 집행위는 “European Code of Best Practice”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조달시장 참여 장벽 제거를 위한 정책을 수행 중에 있으며, EU 회원국 중소기업 간 공공시장 참여 경험 및 정보 공유 웹사이트를 구축

특히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선호하여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영국 정부조달 정책은 금액대비 가치의 극대화로 기초가 설정되어 있으며, 금액대비가치를 통해 공공지출의 경제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평가

- ▶ 이에 따라 영국은 정보공개를 통한 입찰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참여 시 불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2) 시사점

유럽 공공조달 시장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국내 제도 차이점

- ▶ 유럽의 공공조달 정책은 효율성과 경제성 극대화를 기조로 하며, 공공조달시장 내에서 경쟁을 교란하는 제도 시행을 원칙적으로 불인정
- ▶ 이에 따라 유럽의 중소기업 보호제도는 입찰에 대한 정보 확대 등의 간접지원을 중심으로 수행되며, 직접 지원은 사회적 책임 이행 기업에 대해 실시. 이는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직접 지원을 실시하는 국내제도와 차별화 됨

유럽의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직접지원 방식을 배제하고, 공공시장 진입장벽 제거, 공공입찰정보 접근기회 확대 등의 간접지원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조달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에 따른 기술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함으로 풀이된다.

[표 2] 해외 공공조달 중소기업지원제도와 국내제도 비교

항 목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지원제도명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Set-Asides	· European Code of Best Practice · SRPP 가이드라인	관공수 적격조합제도
중소기업 직접지원여부	직접지원	직접지원	간접지원	직접지원
제도의 목적	중소기업보호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확대	소기업 보호	중소기업 공공시장 참여 장벽 제거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지원 대상	중소기업 전체	소기업	· 간접지원 : 중소기업전체 · 직접지원 : 사회적 약자 기업, CSR 이행 기업	중소기업 전체
품목지정 여부	직접적인 품목지정 (특정 품목에 비중소기업 진입 불가)	계약건별로 계약담당관이 예외적으로 지정가능	지정하지 않음	지정하지 않음
비중소기업 참여가능여부	유찰수의계약 또는 타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참여가능 (실질적으로 참여불가)	계약담당관이 중소기업합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참여가능	가능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50%	23%	없음	45%

3. 국내 중소기업 지원 제도 개선 방안

해외 공공조달 중소기업 보호제도는 국내 제도 대비 유연한 제도

- ▶ 해외 제도는 크게 소기업 중심(미국), 중소기업 수주기회확대(일본),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 철폐(유럽)로 요약되어, 국내제도 대비 유연한 지원 방식을 채택
- ▶ 특히 직접적인 품목 지정방식을 가능한 활용하지 않으며, 품목지정을 허용하는 미국의 경우도 예외적으로만 인정. 이는 공공시장에서의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가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관점에서 해석 가능. 또한 조달물품의 품질확보 측면에서 공공조달시장 기업 간 경쟁을 확대하는 추세
- ▶ 해외 제도를 통해 본 국내 제도 시사점은 다음 4가지 차원으로 요약 가능
 - 소기업 보호 강화
 - 중소기업 지원 대상 금액구간 지정
 - 비중소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 규정
 - 중기간경쟁제품 내 기업 간 경쟁 확대

소기업 보호 강화 및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차등 지원 실시

- ▶ 미국은 여타 국가의 지원제도에 비해 강한 직접지원 제도 채택. 그러나 지원 대상을 소기업에 한정함으로써 약자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시행 중
- ▶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 역시 자생력이 약한 약자기업에 대한 공공시장 지원 제도인 만큼 소기업과 중기업을 분리하여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 현행 「판로지원법 시행령」은 1억원 미만의 소액 계약건에 대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을 실시하도록 규정. 그러나 2014년 기준 1억원 미만 중기간경쟁제품 구매실적은 약 5조 4천억원으로 2014년 전체 중기간경쟁제품 구매실적의 약 36%에 불과
- ▶ 따라서 소기업에 대한 금액구간을 확대하고, 중기업에 대한 경쟁계약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비중소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소기업과 중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차등화 필요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계약의 금액구간 지정 품목 확대

- ▶ 중기간경쟁제품에 해당될 경우 일부 품목 외에는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상한 없이 중소기업에게만 입찰 기회 부여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별표 1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규모별 입찰 참여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지정된 품목이 약 12개로 매우 제한적

[표 3] 중소기업의 규모별 경쟁 적용제품 및 규모별 입찰 참여 범위

조합명	업종	참여제한범위 (단위: 억원)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광고물제작연합회	간판, 전시대, 안내판(옥외용)	미제한	0.5 미만	0.7 미만
금속가구연합회	사무용가구(금속제에 한함)	미제한	0.3 미만	0.6 미만
감시기기조합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미제한	0.5 미만	1.9 미만
전기조합	배전반	미제한	0.6 미만	1.9 미만
자동제어조합	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	미제한	0.7 미만	1.9 미만
전시공업조합	실물, 모형	미제한	0.3 미만	0.8 미만
대한가구조합연합회 금속가구연합회	가구, 실내장식가구	미제한	0.3 미만	0.6 미만

출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별표 1

- 중소기업 지원 시 특정 품목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해당 품목의 비중소기업 공공판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을 의미. 따라서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 운영 시 원천적으로 입찰금액의 상한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전 금액구간을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것이 적절함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공동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 마련

- 미국 Set-Asides 제도의 경우 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Partial Set-Asides 제도를 운영. 이는 조달의 특성 상 소기업의 단독 계약 이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 해당 제도는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공동참여가 필요한 조달계약에 적용 가능. 따라서 조달물품 중 높은 품질등급 또는 안전등급이 필요한 계약에 대해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공동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정 마련 필요

중소기업자간 경쟁 확대를 위해 소수 중소기업에 공급이 집중되는 품목을 제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 수립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10조는 ‘해당 품목에 대해 유효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 어려운 경우’ 지정 제외가 가능하도록 규정. 따라서 소수기업의 집중도가 높은 품목을 지정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존재

***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의 규정(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10조)**

제10조(지정 제외) ①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연도 내에 지정을 제외할 수 있다.

1. 입찰에 있어서의 물량 및 가격담합, 고의적 유찰 등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수사결과 부당행위가 인정되어 관련 기관이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제품
2. 지정추천 신청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사유 등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 제품
3. 해당 품목에 대해 유효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
4. 해당 경쟁제품의 지정추천신청을 한 조합 또는 중소기업자가 지정 제외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지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도 내에 경쟁제품을 지정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외 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보호정책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기업 육성정책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국내 제도는 지나친 보호정책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특정 공공시장 전체를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방식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를 기업 육성 위주의 유연한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 그러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 제품에서 단독 공급자에 의한 계약이 나타나고 일부 기업에 의한 매출 집중도가 높은 품목 발생
- ▶ 조달청 2013년 계약금액 기준 중기간경쟁제품의 매출 순위 상위 기업 매출점유율을 보면, 상위 10% 업체가 56.2%, 상위 3개 업체가 29.0%, 상위 1개 업체가 14.0%를 점유하고 있어 상위공급업체에 대한 매출편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현행 규정은 시장에 독과점이 발생하더라도 지정 제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부재. 따라서 상위기업 집중도 등 정량화된 명확한 지정제외 기준 수립 필요

현행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제도를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 필요

- ▶ 현행 국내 공공조달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특정 공공시장 전체를 중소기업에만 지원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경쟁을 약화시킴
- ▶ 그러나 해외 선진국 조달정책은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 시 중소기업 보호보다는 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경우 지원정책을, 중기업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육성 정책을 수행
- ▶ 이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보호대상 기업이 아니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석 가능. 이러한 관점은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혁신 및 국가 성장 동력 제고 측면에서도 부합

- ▶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 시 특정 공공시장 전체를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방식을 완화하여 현행 보호위주의 제도를 기업 육성 위주의 유연한 제도로 전환 필요. 이는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문헌

- [1]. 김대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지방계약연구, 제3호, pp. 89~112, 2011
- [2]. 법제처·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분야 규제개선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선진외국 사례 연구", 2014
- [3]. 중소기업특별위원회·산업연구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개선방안", 2001
- [4].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미국연방조달규정해설", 2011
- [5]. 중소기업청·한국조달연구원, "공공조달시장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공공구매 지원방안 연구", 2006
- [6].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중소기업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 적용현황 및 문제점 분석", 2013
- [7]. European Commission, "Annual Public Procurement Implementation Review 2013",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2014
- [8]. European Commission, "Buying Social : A Guide to Taking Account of Social Considerations in Public Procurement", 2010
- [9].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DE OF BEST PRACTICES FACILITATING ACCESS BY SMES TO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2008
- [10]. U.K. Government, "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 Statutory Instrument, 2015
- [11].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U.S.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 [12].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U.S. Small Business Act"



041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3층 (도화동, 도원빌딩)
TEL 02-3275-3125 FAX 02-3275-3131
www.heri.re.kr